경상남도 공고 제2026-738호

「2026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고용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을「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하여, 청년 채용확대 및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유도하고자, 금년도 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4. 23.

경 상 남 도 지 사

1.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

-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하여, 2년 간 지원하는 사업
- 인증기관 : 경상남도
- 선정절차

기업모집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협약체결 인증패 교부
사업공고 및 신청	➡	자격조건 등 심사	➡	민간실사단	➡	선정위원회	➡	경상남도 ↔ 기업
3~6월		6월		7월		7월		8월

* 현장실사 시, 민간전문가(청년평가단 포함) 참여

* 상황에 따라 선정절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26. 4. 23.(목) ~ 5. 28.(목)

○ 신청대상 : 경상남도 소재(본사) 중소기업

○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국내기업의 지사
-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장(최근 5년 이내)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 기타 경상남도지사가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3. 심사 · 선정

○ 선정방법

구 분	평가방식
1차 서면심사	ㅇ 절대평가 :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의한 정량적 평가 ㅇ 평가방법 :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서면심사 ㅇ 평가배점(100점) : 기업안정성,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등 ㅇ 선 정 : 선정목표의 1.5배 선발
2차 현장실사	ㅇ 상대평가 : 서면심사 통과기업 대상 증빙서류에 따른 정성적 평가 ㅇ 평가방법 : 현장실사단 기업방문 면담 및 현장점검 ㅇ 평가배점(100점) : 근무환경 및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실태 등
3차 선정위원회 심의및선정	ㅇ 상대평가 : 위원회 개최를 통한 정성적 평가 후 의결 ㅇ 평가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의결 ㅇ 선 정 : 서면심사(100점) + 현장실사(100점) 총점 상위 20개 기업을 선정 위원 의결로 선정

- 경남 청년친화기업 모델 : 세부기준 미달시 제외

구 분	세부기준	비고
① 신입 초임임금	경상남도 생활임금 이상	* 최근 1년 ④+⑤+⑥ 지표 합계 6개 이상
② 신규 채용청년	5명 이상 채용(전체근로자 50명 이하, 3명 이상) * 39세 이하	
③ 청년근로자 비율	전체 근로자 대비 청년 35% 이상	
④ 일생활균형제도	육아휴직, 육아지원(수유실, 물품, 돌봄 등), 결혼·출산지원(물품, 축하금 등) 유연근무(재택, 원격, 시차출근, 근로시간단축), 특별휴가(기념일 조기퇴근, 장기재직휴가 등),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	
⑤ 조직문화혁신제도	신입 조직적응 교육(온보딩, 청년간담회 등) 청년친화 조직문화(1대1 멘토링, 영화·야구관람, 문화쿠폰, 간식제공 등)	
⑥ 복지지원제도	동호회, 교육훈련, 해외연수, 기숙사, 카페테리아 등	

❍ 심사배제 대상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최근 2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기타서비스업(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및 관리 및 운영업) 등 지원 부적합 판단 기업 **[참고 1]**
-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 법정 보장제도(육아휴직, 성희롱 예방 등) 부재 기업
- 신용평가등급이 C이하(또는 최저등급)인 기업
- 재무제표 확인서 상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심사기준 및 배점

가. 1차 서면심사 (10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
기업 기본정보		기업정보 및 구비서류 일치여부	10
기업안정성		신용평가등급	10
		매출액 성장률(자본잠식기업 여부)	10
고용 창출		전체 직원 중 청년 비중	10
산업재해율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10
임금 수준	초임임금	신입사원 초임임금 수준	5
	임금 상승률	최근 2년간 임금상승률	5
	성과급	기업별 성과급 지급 수준	5
	부가급여 (가점)	교통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 지급 여부 등 (개당 1점)	3
고용 안정성	청년고용 증가율	최근 2년간 청년 고용증가율 및 증가인원	10
	청년정규직	채용 청년 중 정규직 비중	10
	청년 고용유지율	청년근로자의 1년간 평균 고용유지율	15
기타	추가사항 (가점)	비제조업일 경우	1
		공공기관 인증서(개당 1점)	2
		경남도 일자리관련 사업 참여 여부 (고용우수기업, 기업 채용 연계 청년일자리 사업 등) ※ 단, 국비인건비 지원사업은 제외(1개 이상 1점)	1

나. 2차 현장실사 (10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기업 성장잠재력		경영자 인터뷰 및 기업소개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기업 성장 잠재력 파악	20
근로환경		기업 주위 환경 확인 및 작업장 내 근로 환경 확인(위험성 여부 및 쉼터 공간 등 확인)	20
조직문화혁신		온보딩프로그램, 청년간담회, 파티운영 등	10
		청년 친화적인 조직문화 정착 노력, 노사 상생 및청년 친화를 위한 인터뷰(사업주 및 재직자 인터뷰)	10
일・생활균형		① 육아 지원제도 운영실적(최근 2년 휴직현황) ② 경력단절여성 채용실적(최근 2년 신규채용현황) ③ 유연근무제 운영실적(재택, 원격, 시차출근 등) ④ 휴가 지원실적 등(특별휴가, 기념일, 조기퇴근 등)	20
		육아휴직 복귀자 인터뷰	10
복지 제도	자기개발	교육비, 교육제도, 사내 동호회 운영, 해외연수 등 자기개발비 지원 여부	5
	복리후생	기숙사, 통근차량, 카페테리아, 휴게시설 유무, 체육시설, 육아시설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 여부	5

4. 제출서류

가. 참여 신청시

❍ 제출 서류

- 청년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확인]
- 재무제표확인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함, '24~'25년 비교자료 필수)

- 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명부[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확인]
 예)'24년·'25년 각 1건(1.1.~12.31.) 및 '26년 1건(1.1.~공고일 이전월까지) 제출

 ※ **외국인노동자 별도 표시 필수**

-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
-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나이스평가,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등)
- 취업규칙(파일로만 제출)
- 재직기간 1년미만 청년의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 명세서
 (최근 1년 간, 채용 1년차에 한함)
- 최근 3년간 직급별 연봉기준표
-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서
- 부가급여 지급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 재직 중인 청년들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공공기관 인증서(가점)　　예) 고용우수기업, 스타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 **신청방법** : **제출서류(서식 1의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e-메일, 우편(방문)으로 모두 제출**

- (e-메일) jjuya2822@korea.kr
- (우편 또는 방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산업인력과(본관 1층)

나. 서면심사 후

- 조직문화혁신제도, 청년친화문화제도 운영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직장적응교육, 청년간담회, 1대1 멘토링, 영화야구관람 등)
-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육아지원제도, 경력단절여성 채용, 유연근무, 특별휴가 등)
- 교육비 등 자기개발비 지원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 복지후생 지원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동호회, 자기개발비, 해외 연수, 기숙사, 어린이집, 카페테리아 등 사진 포함)
- 경남도 일자리관련 사업 참여 인증서 또는 확인증
- 기타 평가항목 증빙서류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산업인력과(본관 1층)

○ 제출기한 : 서류심사 결과 발표 후 5일 이내(주말 제외)

나. 문의처 : 경상남도 산업인력과(☎055-211-3563)

5. 인증기간 및 지원내용

❍ 인증기간 : 2년 (선정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 지원내용 : (공통) 복지비, (선택) 인건비와 시설개선비 중 택일

<table>
<tr><th>구분</th><th>지원 내용</th><th>비고</th></tr>
<tr><td>근로자
복지지원
(공통)</td><td>· 복지비 : 근로자 복지지원금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기업 자부담 10%)
- 상시근로자 수 대비 차등 지원
. 50인 미만 : 10백만원
. 50~100인 미만 : 15백만원
. 100인 이상 : 20백만원
※ 2회 지원 : 1, 2차년도 각 1회</td><td>산업
인력과</td></tr>
<tr><td>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
(인건비)</td><td>· 육아휴직대체인턴 :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 경남도 생활임금 * 12개월
- 기업당 최대 3명
※ 청년인턴 임금 : 경상남도 생활임금 적용('26년 월 2,530,990원)</td><td>산업
인력과</td></tr>
<tr><td>추가고용 장려
(인건비)</td><td>· 추가고용장려금 :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 월 50만원 * 6개월
- 기업당 최대 3명</td><td>산업
인력과</td></tr>
<tr><td>근무환경개선
지원</td><td>· 근무환경개선금 : 청년친화시설 개선 지원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1회 지원
※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 협약 후 다음 연도내 집행</td><td>산업
인력과</td></tr>
<tr><td>경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td><td>· 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 : 0.4~1.0점 적용
- 청년 고용비율 증가율 또는 신규 청년 고용 수에 따라 차등
<table>
<tr><th>청년고용비율</th><th>신규 청년 고용수</th><th>배점</th></tr>
<tr><td>40% 이상 증가</td><td>4인 이상</td><td>1.0</td></tr>
<tr><td>30% 이상 증가</td><td>3인 이상</td><td>0.8</td></tr>
<tr><td>20% 이상 증가</td><td>2인 이상</td><td>0.6</td></tr>
<tr><td>10% 이상 증가</td><td>1인 이상</td><td>0.4</td></tr>
</table></td><td>회계과</td></tr>
<tr><td>노무컨설팅 지원</td><td>·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 지원 : 노동상담, 권리구제, 컨설팅 등
- 청년친화기업 및 소속 재직 근로자</td><td>사회경제
노동과</td></tr>
<tr><td rowspan="3">중앙부처 및 도
사업 선정 우대</td><td>· 고용우수기업 선정 우대 : 가점 부여</td><td rowspan="2">산업
인력과</td></tr>
<tr><td>· 직장적응 지원 교육 사업 등 선정 우대 : 우선 선정</td></tr>
<tr><td>·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선정 우대 : 가점(+5)부여</td><td>국제
통상과</td></tr>
<tr><td rowspan="3">금융우대 혜택</td><td>· 기업대출 시 우대 금리 적용
- 농협 : 일반기업 대비 최고 1.5% 우대
- 경남은행 : 일반기업 대비 최고 1.7% 우대</td><td>농협
경남은행</td></tr>
<tr><td>-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자금융자 이차보전 우대 최대 0.5%p 추가 지원</td><td>경제
기업과</td></tr>
<tr><td>·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 산정보증요율 0.3% 감면</td><td>소상공인
정책과</td></tr>
</table>

6. 업체 선정/통보 : 2026년 7월(예정) / 최종 선정 후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 신청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노동 관련 법(근로기준법 등) 및 환경 관련 법 위반 문제로 해당 노동지청과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던 사실과 처분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심사 탈락, 인증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함.

○ 자가 및 임차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인증이 제한될 수 있음.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055-211-3563)**으로 문의

서식1 **청년친화기업 신청서**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인증 신청서

1.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성 명**	
홈페이지			**생년월일**	
주 소(본사)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종 **※ 해당업종에 √표시**	□ 정보통신업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문화컨텐츠 □ 기타			
주요생산품명 또는 사업내용				
자 본 금*	백만원	**연간매출액***	백만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 당 자		**E-mail**		

* 자본금, 연간매출액 : 공고일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2. 기본 자료

신입초임임금 (재직1년 미만)		정규직 근로자 수		일생활 균형제도	조직문화 혁신제도	복지지원제도
		전체	청년 (18~39세)			
합계				ㅇ예) - 육아휴직 - 유연근무 - 특별휴가 등	ㅇ예) - 온보딩 - 멘토링 - 영화관람 등	ㅇ예) - 동호회 - 교육훈련 - 카페 등
기본급						
수 당	초과수당 제외					

3. 부가급여 추진 현황(해당 부분에 체크)

종류	① 교통비	② 정액급식비	③ 가족수당	④ 복지포인트
여/부				
종류	⑤ 문화바우처	⑥ 스톡옵션	⑦ 모다드림 청년통장	⑧ 기 타
여/부				

⑧기타 내용서술()

4. 자기개발비 지원 현황(해당 부분에 체크)

종류	① 교육비 지원	② 교육제도 운영	③ 동호회 운영 지원	④ 해외연수 지원
여/부				
종류	⑤ 기 타(내용 서술)			
여/부				

5. 복리후생(해당 부분에 체크)

종류	① 기숙사	② 통근차량	③ 카페테리아, 휴게시설	④ 체육시설
여/부				
종류	⑤ 육아시설 (어린이집 등)	⑥ 기 타 (내용 서술)		
여/부				

본인은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모집과 관련한 모든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허위기재·미제출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기업체명 대 표 (인)

경상남도 귀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1호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에 대한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 체크 필수**

▶ 동의 시 확인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 시 등록 및 연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까지
4.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선정 및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첨부서류	1.사업자등록증사본 2.법인등기부등본 3.중소기업확인서 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5.재무제표확인서 6.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명부 7.산업재해율확인서 8.신용평가등급증명서 9.급여대장 10.직급별 연봉기준표 11.성과급지급기준및내역 12.부가급여지급기준및내역 13.재직청년근로계약서사본

서식2 청년친화기업 신청기업 증빙서 자체점검 목록

1. 참여 신청시 제출 목록

*** 반드시 연번(증빙) 편철 순서로 확인 및 제출**

연번 (증빙)	내 용	확인 여부
1	지원신청서[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중소기업 확인서	
5	국세 완납증명서	
6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재무제표확인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함) - '24년, '25년 각 1부씩	
8	최근 3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명부[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확인] - '24년·25년 각 1건(1.1.~12.31.) - '26년 1건(1.1.~공고일 전월.) 제출 **※ 외국인노동자 별도 표시 필수**	
9	산업재해율 확인서	
10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참고 2)	
11	취업규칙(전자파일로 이메일제출)	
12	재직기간 1년미만 청년의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 명세서 - 최근 1년 간, 신입채용 1년차에 한함	
13	최근 3년간 직급별 연봉기준표	
14	성과급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서	
15	부가급여 지급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16	재직 중인 청년들의 근로계약서 사본	
17	비제조업종 여부	
18	공공기관 인증서(건수)	
19	경남도 일자리관련 사업 참여 여부	

2. 서면심사 후 제출 목록

*** 반드시 연번(증빙) 편철 순서로 확인 및 제출**

연번 (증빙)	내 용	확인 여부
1	조직문화혁신제도, 청년친화문화제도 운영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직장적응교육, 청년간담회, 1대1멘토링, 영화야구관람 등)	
2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육아지원제도, 경력단절여성 채용, 유연근무, 특별휴가 등)	
3	교육비 등 자기개발비 지원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 ※ 취업규칙에 근거한 교육 지원 제외	
4	기숙사 등 복지후생 지원 기준 및 관련 증빙자료(사진 포함)	
5	경남도 일자리관련 사업 참여 인증서 또는 확인증 ※ 단, 지역주도형일자리 사업 등 국비 인건비 지원사업은 제외	
6	기타 평가항목 증빙서류	

참고1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심사 배제대상 업종

업종분류	업종	분류코드
1.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여관업	55112
	나. 그외 기타 숙박업	55909
	다. 일반유흥 주점업	56211
	라. 무도유흥 주점업	56212
	마. 기타 주점업	56219
	바. 비알콜 음료점업	56220
2.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1
	나.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2
	다. 기타 부동산 임대업	68119
	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1
	마.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8122
	바.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68129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골프장 운영업	91121
	나.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다. 무도장 운영업	91291
	라.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9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이용업	96111
	나. 두발미용업	96112
	다. 피부미용업	96113
	라. 기타미용업	96119
	마. 욕탕업	96121
	바. 마사지업	96122
	사.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96129

* 비고 : 업종분류, 업종, 분류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참고2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 평가방법 안내

❍ 평가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평가)업자가 발급한 <u>공고기간 내 유효한 신용평가서</u>
- 신용평가서가 없는 경우, 최근년도 재무결산자료를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해 평가 실시하여 제출 ※ **반드시 기업신용등급이 적시되어야 함.**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청년친화기업 심사대상 여부	비고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대상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비대상	

주1) 심사대상 제외 :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highly speculative) 등급인 경우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 이하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①, ②에 준하는 등급

참고3 청년친화기업 지원금 지출항목(예시)

▢ 복지지원금

지원유형	분류	지원가능 예시	유의사항
확인 사항	1. 복지 관련 지출은 근로자에 한해 지원함. (거주지 경상남도 내) 2.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출관련 내부품의, 회계정산서로 증빙되어야 함. 3. 모든 지원금은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어서는 안됨. 4. 현금성 지급은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계좌이체로 항목을 명시하여 지급하여야 함. 5.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지원되지 않음. **6. 복지 관련 지출은 회사내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지원함.** 7. 복지관련 지출시 구비서류 : 회사내규		
일생활 균형	축하금-기념일	졸업・결혼・출산・생일 등	기념일 증빙서류 첨부
	휴가	휴가비	전년대비 휴가비 상향 및 내규로 정해지는 경우 가능
복지 지원	건강	건강검진비	검진확인증 첨부
	자기개발	자기개발비	교육이수증 첨부
	주거독립	이사비	이사비용 증빙
	기숙사 운영	기숙사 임대료	임대보증금은 불가 월 임대료는 가능 – 계약서 첨부
	복지포인트	경남사랑상품권	회사내규로 정해지는 경우 가능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 운영	강사료, 교재비 등 - 직무교육 - 신입교육	- 간식비, 식음료는 불가 - 영수증 첨부
	동호회	활동비	- 증빙가능 항목만 가능, 영수증 첨부 (식음료는 불가)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유형	분류	지원가능 예시	유의사항
확인사항	* 시설개선을 위해 구입한 물품은 시설이 개선되는 공간내에 비치되어 있어야함. 증빙자료 사진 첨부		
시설개선	시설 개선	사무실 리모델링 (외관포함)	세부 공사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휴게실 리모델링	세부 공사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세부 공사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가전 (사무실)	공기청정기, 에어컨, 선풍기, 컴퓨터 등	제품구입 명세서 첨부
	가전 (휴게실)	커피머신	* 커피 - 커피머신(개별구매 또는 계약렌탈 가능) - 캡슐 또는 원두 (계약에 의해 배송받는 경우 가능)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냉장고, 정수기, 안마의자, 게임기, 의류관리기 등	* TV - 휴게실만 인정 (회의실, 사무실 비치는 불인정)
		테이블, 소파 등	제품구입 명세서 첨부
		사내도서관용 도서구입	구입도서 목록 첨부
	기구 (체력단력실)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	제품구입 명세서 첨부